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종사자용) (년도)

(앞쪽)

[illegible]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제8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12제3항, 제56조의13, 제56조의15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6제3항, 제42조의7제2항, 제42조의11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월 보수액을 [] 신고, [] 정정신고합니다.

일
만
년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장 귀하

첨부서류	보수지급명세서 등 소득 증명 서류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유의사항

노무제공자 본인이 직접 월보수액을 신고하려는 경우는 사업주의 월 보수액 법정 신고기한(노무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이 지난 후에 해야 하고,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월 보수액 신고인지 정정신고인지 구분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에는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2. “직종 부호”에는 아래 직종 부호란에서 해당하는 직종의 부호를 적습니다.
3. “단기노무제공자”에는 신고인이 1개월 미만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에 체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비해당”에 체크합니다.
4. “월 보수액”에는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을 적습니다.

법 제48조의6제3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이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직종 부호

950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981 유치원·어린이집 강사
952 건설기계조종사	964 유통배송기사
959 골프장캐디	982 퀵서비스기사(이륜자동차로 배송)
967 관광통역안내사	983 퀵서비스기사(자가용자동차로 배송)
958 대리운전기사·택송기사·대리주차원	984 퀵서비스기사(도보·자전거 등으로 배송)
949 대여제품방문점검원	944 택배기사
945 대출모집인(여신금융기관 소속)	943 학습지·교육교구 방문강사
946 대출모집인(대출모집법인 소속)	963 화물차주(곡물가루·곡물·사료 운송)
951 방과후학교 강사	985 화물차주(기타 품목 운송)
948 방문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	956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운송)
941 보험설계사(생명보험사 소속)	953 화물차주(시멘트 운송)
942 보험설계사(생명보험사 외 소속)	955 화물차주(위험물질 운송)
986 살수차·고소작업차·카고크레인 조종사	962 화물차주(자동차 운송)
960 소프트웨어기술자	954 화물차주(철강재 운송)
947 신용카드회원모집인	961 화물차주(택배 지선·간선 운송)
968 어린이통학버스기사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신고인



접수 및 확인

근로복지공단



신고서 처리

근로복지공단